

第18回 達西區議會(臨時會)

# 社會·都市委員會會議錄(附錄)

第 1 號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事務課

## 目 次

- 1. 住居環境改善事業特別會計設置 및 運營條例制定案 ..... 99 面
- 2. 大邱直轄市達西區建築條例制定案 ..... 103 面

## 대구직할시달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제정안

議 案	
番 號	

提出年月日 : 1993. 3. .

提 出 者 : 達西區廳長  
(建 築 課)

### 1. 제정사유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2. 설치근거

-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2조 제2항 (조례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회계의 구분)
- 지방재정법 제5조 (회계의 구분)

### 3. 제정주요내용

#### 세 입 (제3조)

- 양여받은 토지의 처분 수익금(국·공유지 매각)
- 국비 및 시비 보조금
- 타회계 전입금
-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 차입금 및 기사 수입금

#### 세 출 (제4조)

- 공공시설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
-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 이주 대책비
- 지방채 및 국내차입금 상환
- 차입금 상환
- 공법인에 대한 출자
- 지구안 국유, 공유지 관리와 사무관리 및 기타 운영등에 필요한 재경비

#### 지방채의 발행

-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 발행
-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

#### 잉여금의 처리

-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입

#### 지구별 재산제

-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 재산 원칙
- 지구별 재산제에 의한 증액과 감액 발생시 타지구에 사용

첨부 : 대구직할시달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제5조 (지방채의 발행등) ① 이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대구직할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6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 (지구별 채산제)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별 채산제에 의한 증액과 감액 발생시 타지구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부 칙

① (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대구직할시 달서구 건축조례제정배경

도 시 국 건 축 과

## 대구직할시 달서구 건축조례 제정 (안)

### 건축조례 제정 배경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2.5.30. 개정되어 '92.6.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구건축조례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 건축허가(신고)처리절차

구 분		종전 ('92. 5. 31. 이전)	현행 ('92. 6. 1. 이후)	
허 가	○ 6층이상 ○ 3천제곱 미터이상	시 장 권 한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구 청 장	○ 21층이상 이거나 1 만㎡이상 인 건축물 은 시장승 인대상임.
	○ 6층미만 ○ 3천제곱 미터미만	시 장 권 한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구 청 장	
신 고		시 장 권 한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동 장	

## 시·구 건축조례구분

시	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위원회</li> <li>2. 적용의 특례</li> <li>3.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li> <li>4. 건 폐 율</li> <li>5. 용 적 율</li> <li>6. 높이제한의 완화구역</li> <li>7.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위원회</li> <li>2.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li> <li>3. 건축종합민원실</li> <li>4. 건축허가수수료</li> <li>5. 가설건축물</li> <li>6.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li> <li>7. 건축지도원</li> <li>8. 대지안의 건축제한</li> <li>9. 도로안의 건축제한</li> <li>10. 대지면적의 최소한도</li> <li>11. 대지안의 공지</li> <li>12.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li> <li>13.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li> <li>14.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li> <li>15. 시설보호 지구안의 건축제한</li> <li>16.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li> <li>17. 재해위험지구안의 건축제한</li> <li>18.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제한</li> <li>19. 온돌의 시공</li> <li>20. 도시설계 작성방법</li> <li>21. 공개공지등의 확보</li> <li>22.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li> </ol>